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363
----------	-------

발의연월일 : 2025. 9. 29.

발 의 자 : 이상식 · 임호선 · 이개호
윤건영 · 이병진 · 이광희
이강일 · 조계원 · 김문수
이재관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경찰관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외국 정부기관이나 국제형사경찰기구(ICPO, 통칭 ‘인터폴’)와 같은 국제기구 등과 자료 교환, 국제협력 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이와 같은 국제협력 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사무기구 설치 근거나, 외국 또는 인터폴과의 상호 인력 파견 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경찰직무의 원활한 국제공조(共助)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제협력 활동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에 ‘국제협력 사무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필요한 경우 재외공관, 외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등에 소속 경찰관을 파견하거나, 외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소

속 임직원 등을 파견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찰직무의 원활한 국
제공조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제8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등).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국제협력 활동 등”을 “국제협력 활동 등(이하 이 조에서 “국제협력활동등”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에 국제협력활동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사무기구(이하 이 조에서 “국제협력 사무기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③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국제협력 사무기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과 그 밖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원활한 국제협력활동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에 따른 재외공관, 외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등에 소속 경찰관을 파견하거나, 국제협력 사무기구에 외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소속 임직원 등을 파견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사전에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국제협력활동등의 구체적인 내용·방법·절차 등과 국제협력 사무기구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의3(국제협력)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이 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과 자료 교환, <u>국제협력 활동</u> 등을 할 수 있다.	제8조의3(국제협력) ① ----- ----- ----- -----국제협력 활동 등(이하 이 조에서 “국제협력 활동등”이라 한다)-----.
<u><신 설></u>	②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에 국제협력활동등의 원활한 수행 을 위한 사무기구(이하 이 조 에서 “국제협력 사무기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u><신 설></u>	③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 장은 국제협력 사무기구 운영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과 그 밖의 관계기관 · 단체 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 원이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 할 수 있다.
<u><신 설></u>	④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 장은 원활한 국제협력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한민 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에

<u><신 설></u>	<u>따른 재외공관, 외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등에 소속 경찰관을 파견하거나, 국제협력 사무기구에 외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소속 임직원 등을 파견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사전에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u> <u>⑤ 국제협력활동등의 구체적인 내용·방법·절차 등과 국제협력 사무기구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